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069호, 2025. 10. 28. 공포, 2025. 10. 28.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 피해지역 복구·재건을 위한 지원,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 및 사업시행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 1) 위원회는 당연직(7명) 및 위촉직(8명)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며,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2)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재적위원의 1/3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추가지원 신청 및 절차 등(안 제13조)

- 1)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신청서 등을 피해지역 관할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을 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2) 위원회는 추가지원 사항에 대해 부문별로 심의·의결하여 지원계획을 확정 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4조)

지원조직의 명칭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으로 하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하도록 함

라. 피해자 단체 신고 및 의견제출 절차·방법(안 제15조 및 제16조)

- 1)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 10인 이상이 포함된 피해자단체는 가입 동의서 및 구성원 명부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증명서 발급·변경 등 절차를 규정함
- 2) 피해자 단체는 의견제출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수의 피해자 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동영농조직 요건 및 지원 기준 등 마련(안 제17조 및 제18조)

공동영농조직은 20헥타르 이상의 공동경영 면적을 갖추고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며, 주요 농작물 재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동영농 운영기반 및 사업추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바. 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안 제1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스마트팜 운영 기반 및 사업추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산업단지 및 공장, 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1)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의 범위를 제1항 각 호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함
- 2) 피해지역 산업단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등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함
- 3) 농업·임업·수산업 피해의 범위를 제1항 각 호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함

4)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아. 긴급복지지원 및 아이돌봄지원 기준, 기간 및 절차 등(안 제23조 및 제24조)

1)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 간주하여 최대 6개월간 생계지원하고,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함

2)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절차 등에 따라 2031년 1월 28일까지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심리상담 및 의료서비스의 지원 내용·방법 등(안 제25조 및 제26조)

1)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심리상담, 일상회복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2)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비급여 및 보조기기 구입 비용 등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가 지원범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함

차.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안 제29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가중치, 배분 비율 등 세부사항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의 5% 이내에서 피해지역의 피해 정도,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기금관리조합 등의 의견 수렴 및 사용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함

카. 산림경영 지원(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1) 산림경영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임업진흥법」에 따른 협업 경영을 하는 조직으로 하고, 지정 요건을 300헥타르 이상 면적과 산주 동의 비율 50퍼센트 이상 등으로 규정함
- 2) 산림경영특구 신청 시 제출 서류, 국유림 편입시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협의 의무화, 특구 지정 시 신청자 및 산주에게 통보 의무화 등 관련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타. 에너지 보급지원 및 지원 특례의 대상 등(안 제33조 및 제34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에너지 보급지원 특례의 대상 및 범위,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

파. 폐기물처리시설 복구지원 기준 및 절차 등(안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 복구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원 절차를 규정함

하.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 1) 산불피해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시설물 피해, 재해 발생, 교통시설 피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위험목 제거사업 대상으로 하고, 위험목 제거사업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신청 시 필요 제출 서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 2) 위험목 제거사업 실행 시 산림소유자에게 위치, 면적, 위험목 제거 그루

수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위험목 제거사업을 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 등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거. 공익직접지불금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안 제40조 및 제41조)

산불피해지 내 등록 임업경영체에 대하여 임업직불금 지급 완화 기준을 설정하고 기 등록된 경영정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으로 함

너. 피해지역 내 특별재생계획의 절차 간소화(안 제42조)

신속한 특별재생계획 변경을 위해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특별재생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더.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등 기준 완화(안 제43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최소면적과 타당성평가 적지판정 완화 기준, 산림 형질변경 면적 기준을 규정함

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안 제44조)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상담·조언, 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머. 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안 제45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원 절차 등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버. 관광단지 지정요건 마련(안 제46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서. 산림투자선도지구(안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

- 1) 선도지구 지정요건 중 피해산지면적 비율을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 2) 산림투자선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인·허가
등의 의제 기반시설 및 국가 등이 설치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함
- 3)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할 경우 관할
및 인접 지역 소재 영업소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어. 산지관리법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55조)

산지관리법 등 법 56조 및 제58조부터 제59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
과 평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56조)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12.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해지역에서 산불진화·구조·구급·의료지원·복구작업 등을 수행하던 자
2.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던 자
3. 언론보도 등 공익목적의 현장활동을 수행하던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지역에 체류하던 자

제3조(임시주거시설)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제2장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등

제4조(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4명
3. 법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 6명
4.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제7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추가지원 신청 및 절차) ① 법 제8조에 따른 지원은 법 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②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추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함께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추가지원 사항 확인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증거자료
2. 예금계좌 사본
3. 신청인 및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4. 위임장(피해자와 사회재난 추가지원 신청서의 신청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또는 보상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피해내용
 2. 피해 현장
 3.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와 관련된 사항
-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추가지원 사항 확인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추가지원 사항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지원 사항의 부문별로 심의·의결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확정 한 후 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지원계획을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⑧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 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원금의 용도 및 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내역을 예금계좌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신청은 2027년 1월 28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피해지원 및 재건을 위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제15조(피해자 단체 신고) ① 피해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위해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피해자 단체 구성원 명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초대형산불 피해자 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 단체는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자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① 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해자 단체에게 추가자료 제출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의 피해자 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공동영농조직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영농조직이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경영 면적 : 20헥타르 이상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 농업인 5명 이상

제18조(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공동영농조직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공동영농 운영 기반 및 계획
3. 사업추진 역량 및 경영계획

②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영농조직은 주요 농작물 재배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스마트팜 운영 기반 및 계획
3. 사업추진 역량 및 경영계획

②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영농조직 및 농업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스마트농업 시설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 지원의 기준) ① 국가등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및 사업장의 건축물·시설·설비·자재 파손·유실
2. 사업장의 기계·장비·생산·유통·가공시설 파손·유실
3. 사업장의 시설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1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지원) ① 피해지역 산업단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지원 대상사업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시·도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국가등이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2조(농업·임업·수산업 피해복구 지원의 기준) ① 국가등이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호에서 같다) 유실·매몰 및 농경지 매입
2. 농림시설 파손·유실, 농작물 및 산림작물 대파(代播: 재해 등으로 대신 다른 씨앗을 뿌리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농약 대금
3. 축사 파손·유실, 초지 유실·매몰, 잠실(蠶室) 파손·유실, 가축 입식, 누에 유실·폐사
4. 어선 파손·유실, 어망·어구 파손·유실
5.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의 파손·유실, 수산생물 등의 입식
6. 수목 생육저하·전도(顛倒)·고사(枯死), 산림복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24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31년 1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제25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심리상담, 일상 회복 지원 등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

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의료서비스의 지원 내용·방법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서비스는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이하 “부상등”이라 한다)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 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서비스는 산불로 인한 부상등의 치료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불로 인한 부상등의 치료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원범위 등을 정하는 경우 의료서비스에 포함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항목
 2.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기기 구입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간병
-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지원금 등의 환수 기간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을 말한다.

② 국가등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지원된 사실, 환수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납부고지서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 금액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제28조(법정 정책사업 등)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 확대

촉진에 관한 사업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및 시설·장비 등 지원
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수산물위판장현대화관련 시설·장비 등의 지원
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관련 시설·장비 등의 지원
6.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에 따른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생활기반 확충,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등의 지원

제29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 배분 비율 등 세부사항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의 5% 이내에서 피해 지역의 피해 정도,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분 가중치, 배분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이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에 따라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기금은 지역의 재건 및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제30조(협업경영조직)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협업경영조직”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1조(산림경영특구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특구는 경영면적이 규모화·집단화되고 산주의 참여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산림경영특구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일 것
2. 신청일 기준 참여 산주의 동의면적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3. 국유림 편입 면적이 사유림 면적보다 적을 것
4. 지정대상 구역에 편입된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32조(산림경영특구의 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림경영특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림경영특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특구 사업계획서 및 계획도
2. 산림경영특구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3.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제31조제2호에 따른 산주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산림경영특구에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국유림이 포함되어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해당 산림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한 경

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신청자 및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에너지 보급 지원)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소관의 에너지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4조(에너지 보급 지원 특례의 대상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 특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피해자 및 피해지역 거주 주민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에너지 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지원 특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관련 국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보조금 추가 지원 등 특례 적용
2.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시 설치비용 보조 및 컨설팅 우선 지원
3. 취약계층 대상 연료비·전기요금, 고효율 기기 교체사업 우선 지원
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사업 추가 지원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규모 및 방식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지원 절차, 신청서류, 지원 우선순위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가 각각 고시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 복구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폐기물 매립시설
2. 폐기물 분리배출시설
3. 영농폐기물 수집 및 보관시설
4.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및 장비 등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복구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피해시설의 철거비, 폐기물 운반·처리비, 설계비, 공사비와 부대시설의 복구비를 포함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차량 및 장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수리·수선 및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복구 지원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피해 지역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폐기물처리시설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지원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복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36조(위험목 제거사업 대상)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피해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주택 및 시설물 등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2. 산불피해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계곡, 하천 등의 물길을 막아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 산불피해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4. 산불피해목이 소나무재선충 매개충 산란처로 이용되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발생 또는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위험목 제거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불피해정도가 ‘경’인 지역
2. 경사도 34도 이상의 급경사지 또는 돌이 많은 땅(石礫地)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대상의 세부적인 요건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위험목 제거사업 시행) ① 법 제30조에 따른 위험목 제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가등이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

② 법 제30조에 따른 위험목 제거방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을 따라야 한다.

③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 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위험목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방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위험목 제거사업 사실통지) ① 국가등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경우 산림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 시행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완

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산불피해 현황

2. 사업 목적

3. 위치, 면적, 사업 시행 기간, 위험목 제거 그루 수 및 채적 등 사업 내용

② 국가등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림 소유자에게 위험목 제거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39조(위험목 제거사업 손실보상)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손실보상 청구자”라 한다)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에 작성하여 국가등에 청구하여야 한다.

1. 보상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목, 주택, 시설물 등 보상물의 피해액

3. 보상물의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사업대상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위험목 제거사업으로 발생한 피해액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목 피해액

2. 주택 및 시설물 피해액

3. 임산물, 농작물, 과수 등의 피해액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 감정평가법인 등 3인(국가등과 산림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 또는 산림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손실보상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3항에 따라 평가한 손실보상액을 손실보상 청구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공익직접지불금 계속 지급 요건)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산지에서 피해목 벌채·제거·정리 및 조림 등의 재해복구 활동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3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

2.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60만원 이상인 임업인

3.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2,25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②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산지의 경우 임산

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산지를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거나,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산지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변경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와 지급대상자의 요건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④ 산불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의 경우 기 등록된 경영정보를 2028년 12월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며 2028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1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절차)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절차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2조(특별재생계획의 절차 간소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자연휴양림 조성 등 기준 완화)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피해 지역의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면적 및 타당성 평가 적지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조성면적 기준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대상지의 산림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일 것

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 15만제곱미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 10만제곱미터

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치유의 숲 : 25만제곱미터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하는 치유의 숲 : 15만제곱미터

2. 타당성 평가 적지 판정 기준

가. 자연휴양림 : 90점 이상

나. 치유의 숲 : 100점 이상

②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만제곱미터 이하

2.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부터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자연휴양림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하
제44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매년 지
원의 지속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5조(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피해자 중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해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마
트공장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예산 규모, 선정 방식

등을 고려하여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해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6조(관광단지 지정 요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면적 기준 :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투자 기준 : 30억원 이상
3. 시설 기준 : 관광객 이용시설, 관광 편의시설, 숙박시설 등 2종 이상 포함

제47조(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다만, 사업계획부지에 산지 외 지역이 100분의 10 이상 편입되는 경우에는 피해산지 면적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8조(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①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도지구개발계획(이하 “선도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선도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선도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도지사에게 의견이 제출된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9조(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1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
터
11.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제50조(인·허가 등의 의제)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51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국가등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아래
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등 유통·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
4. 그 밖에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2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2. 물품 제조·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 건설기계 우선사용 등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3조(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선도지구 내에서 구역 등을 지정·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

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지면적이 400만제곱미터(보전산지의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 이상) 이상인 경우 :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4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시·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② 산림투자선도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선도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투자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③ 산림투자선도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사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

두 충족할 것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표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60 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제54조(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법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2. 법 제57조제2호에 따른 건폐율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

율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법 제57조제3호에 따른 용적률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55조(산지관리법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59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성과평가를 할 때는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에게 중

양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거쳐 법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자 단체 신고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에 관한 사무
10. 법 제31조에 따른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사회재난 추가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4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자녀, [] 형제, [] 친인척, [] 이장·통장, [] 이웃			
피해자 ※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		휴대전화번호		
	소재지(사업장)				
	주거 형태	[]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산불피해에 대한 추가지원 신청 대상 및 내용

추가지원 신청 대상(부문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	대상명		제()조	제()항	제()호	특별법에서 ()에 해당
	피해위치					
	피해물량					
	피해금액	증거자료: [] 있음, [] 없음 추정 피해금액:				
2	대상명		제()조	제()항	제()호	특별법에서 ()에 해당
	피해위치					
	피해물량					
	피해금액	증거자료: [] 있음, [] 없음 추정 피해금액:				

추가지원 신청 대상(부문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3	대상명	제()조	제()항	제()호	특별법에서 ()에 해당
	피해위치				
	피해물량				
	피해금액 증거자료: []있음, []없음 추정 피해금액:				
4	대상명	제()조	제()항	제()호	특별법에서 ()에 해당
	피해위치				
	피해물량				
	피해금액 증거자료: []있음, []없음 추정 피해금액:				
5	대상명	제()조	제()항	제()호	특별법에서 ()에 해당
	피해위치				
	피해물량				
	피해금액 증거자료: []있음, []없음 추정 피해금액:				
6	대상명	제()조	제()항	제()호	특별법에서 ()에 해당
	피해위치				
	피해물량				
	피해금액 증거자료: []있음, []없음 추정 피해금액: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증거자료 2. 예금계좌 사본 3. 신분증 사본(신청인, 피해자) 4. 위임장(피해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 및 피해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및 제11조에 따른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지원, 사실조사, 피해자 지원 대책, 피해자 지원사업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
 - 첨부서류(사회재난 추가지원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지원금 지급사업 등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활용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조사 및 피해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및 제11조에 따른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기관에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신청인·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그 밖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지원, 사실조사, 피해자 지원 대책, 피해자 지원사업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
 - 첨부서류(사회재난 추가지원 신청서의 첨부서류 일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보 제공 시부터 5년간(지원금 지급사업 등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5.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이용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 정보** : 피해자의 관계에서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2. **피해자 정보** : 신청인과 피해자가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피해자는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하며,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 산불 피해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가족 수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 주거 형태, 세대주 여부에서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산불피해에 대한 추가지원 신청 대상 및 내용**

- 추가지원 신청 대상별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의 해당 조항과 연계되도록 작성(부문별 작성)하시기 바라며,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지원 신청 대상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증거자료에 있는 대상명, 추가지원 신청 대상의 피해위치, 피해 물량, 피해 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추가지원 신청 대상을 부문별로 작성**((예) 중소기업 시설, 저장 농산물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해 개별 작성)합니다.
- **피해 금액**과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해당 []에 √ 표**를 하고, **영수증, 거래증명서, 구매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으면, 추정 피해금액**은 증거자료에 있는 금액을 기초로 작성합니다.
- 피해 금액**과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없으면, 추정 금액**을 작성하거나 **공란**으로 둡니다.
-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이 제출한 “사회재난 추가지원 신청서”와 증거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후, **특별법의 관련 조항과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추가지원 신청 대상(부문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	대상명	중소기업 사업장 기계	제(15)조	제(2)항	제(2)호	특별법에서 (사업장 기계)에 해당
	피해위치	□□군 000로 △△ (※ 도로명 주소로 표기)				
	피해물량	A 기계 00대 전소, B 기계 00대 전소				
	피해금액	증거자료: [√]있음, []없음 추정 피해금액: 0000원				
2	대상명	저장 농산물	제(17)조	제(3)항	제(2)호	특별법에서 (농산물)에 해당
	피해위치	□□군 000로 △△ (※ 도로명 주소로 표기)				
	피해물량	저장 사과 000kg 전소				
	피해금액	증거자료: []있음, [√]없음 추정 피해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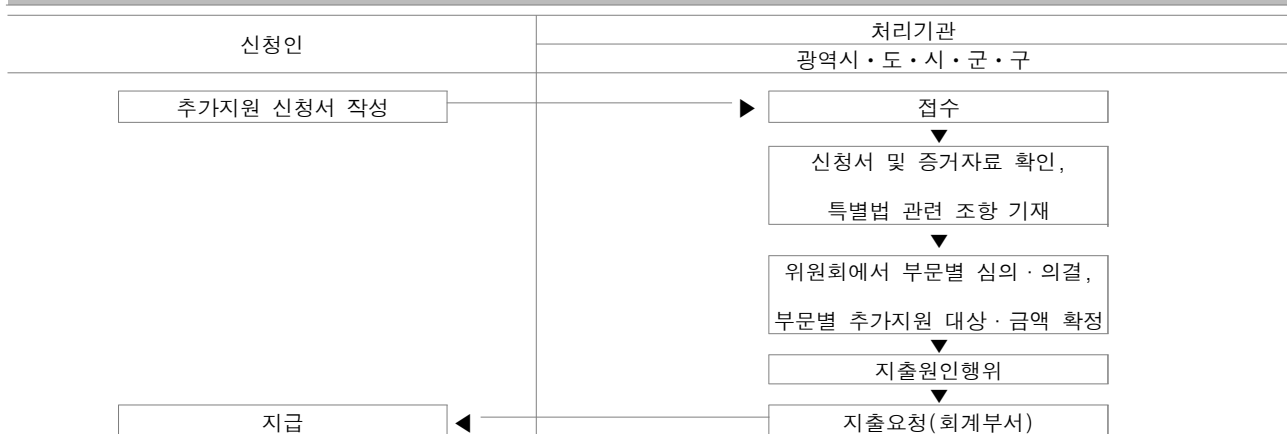
※ 1.과 관련된 특별법 조항, 대상 :

- 제15조(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② 국가등은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 및 사업장 건축물·시설·설비·자재 처리 및 복구, 2. **사업장 기계**·장비·생산·유통·가공시설 복구 지원

※ 2.와 관련된 특별법 조항, 대상 :

- 제17조(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③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농림어업인에 대한 생산기반 복구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 2.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3.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처리절차



제		호	
피해자 단체		☐ 신고 ☐ 변경 신고	증명서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신고 연월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피해자 단체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도지사 사 직인			

의견제출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의견제출 피해자 단체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단체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의견제출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안건 제목		
	의견의 대상이 되는 사항		
	의견의 내용 및 이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피해자 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추가 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료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진료 내용	진료기간		
	진료사유(병명)		
본인 부담 약제비 신청	약국명	전화번호	
	소재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비 지급계산서(영수증), 의료비 지급 세부내역서 2. 의사소견서 (산불로 인한 상해에 대해 치료를 받았음을 기재) 3.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심사·결정



수령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수령인

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정대상지	산림 소재지		
	면적(ha)	필 / 산주수	참여산주 동의면적 비율(%)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산림경영특구 사업계획서 및 계획도 각 1부 2. 산림경영특구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3.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제31조제2호에 따른 산주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현지조사	→	확인 및 심사	→	협의	→	결정·고시·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군수)		처리기관 (시·도지사)		시·도지사↔국유림관리소장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편입될 경우) 그 외 국유림의 경우에는 소관부처와 협의		처리기관 (시·도지사)

위험목 제거사업 완료서

산불피해 현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내용	주소		
	면적		
	기간		
	내용	그루	m ³
	사업시행자		
산림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험목 제거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장
장
장
직인

손실보상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65일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실통지일자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손실내용	주소		
	손실내용		
	손실금액(청구금액)		

신청인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보상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3. 보상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손실보상 적정성 검토, 보상금액 결정	→	결과 통지 산림청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연 락 처	(044) 205 - 6479
	(044) 201 - 1363
	(042) 481 - 4048